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상수도조합에 대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책무를 부여하고,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 의무를 부여함(안 제2조 제3항 및 제4항).
-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,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함(안 제3조제8호·제9호·제21호·제25호 및 제12조제1항).
- 수도사업 통합 추진시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하고, 상수도조합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도록 함(안 제5조제1항·제6항 및 제17조).
-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,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방안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함(안 제12조의3 신설).
- 상수도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23조제1항).
-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함(안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2항제1호).

- 수도통합에 따라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사업의 운영·관리주체가 되므로 상수도조합 등에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30조).

II. 검토의견

1.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관련(안 제5조)

안 제5조제1항 단서는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환경부는 안 제12조의3에 따라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므로 이를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¹⁾.

한편, 안 제5조제6항은 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도지사 또는 상수도조합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과 제9항에 규정된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(제3항),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연계(제4항), 고시 및 통보(제5항), 타당성 재검토(제9항) 등에²⁾ 안 제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

1) 안 제12조의3을 안 제5조의2로 조문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인용조문 또한 안 제5조의2로 명시함

2) 수도법

제5조(수도정비계획의 수립) ①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이 설치·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·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

에 따라 도지사와 상수도조합 등이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 제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와 상수도조합 등이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.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5조(수도정비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이 설치·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·	제5조(수도정비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제5조(수도정비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(이하 “수도정비계획”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삭제 <2022. 1. 11.>

③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도시·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.

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(생략)

⑦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⑧ 삭제

⑨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관리하기 위하여 국가
수도기본계획을 바탕
으로 수도의 정비에
관한 계획(이하 “수도
정비계획”이라 한다)을
10년마다 수립하여야
한다. <단서 신설>

⑥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)의 관할 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.

< 신 설 >

----- . 다만, 제3조 제2호에 따른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⑥ -----

-----특별시장·
광역시장·특별자치시
장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상수도조
합이-----
-----.

---. -- 제5조의2에
따라 수도권사업 통합-

⑥

⑩ 제1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

		<u>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9항을 적용한다.</u>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.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관련(안 제12조의3)

개정안은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2조(수도사업의 경영 원칙), 제12조의2(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)와 제13조(영리행위 금지 등) 사이인 제12조의3으로 규정하고 있음.

수도계획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제4조 및 제5조에서 각각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(수립주기 10년)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가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규정하고 있음(수립주기 10년).

즉 제4조는 국가계획의 기초적인 방향을 설정하고, 제5조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규정하므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·관리를 일원화하는 계획인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은 제5조(수도정비계획의 수립) 뒤에 위치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통합계획의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

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,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통합계획 수립 및 변경절차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– 6 –

	같다.	--
	1. <u>도지사·특별자치도</u>	1. -----
	<u>지사가 통합계획이</u>	----- <u>수도사업 통합</u>
	<u>필요하다고 판단하</u>	-----
	<u>는 경우</u>	-----
	2. <u>둘 이상의 시장·군</u>	2. -----
	<u>수 또는 환경부장관</u>	-----
	<u>이 통합계획 수립을</u>	-----
	<u>요청하는 경우. 다</u>	-----
	<u>만, 통합계획 수립을</u>	-----
	<u>요청받은 도지사·</u>	-----
	<u>특별자치도지사가</u>	-----
	<u>수도사업 통합 효과</u>	-----
	<u>가 미미하다고 판단</u>	-----
	<u>하는 경우는 제외한</u>	-----
	<u>다.</u>	--
	② <u>제1항에 따른 통합</u>	②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</u>
	<u>계획의 대상지역이 둘</u>	<u>· 특별자치시장·도지</u>
	<u>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</u>	<u>사·특별자치도지사는</u>
	<u>· 특별자치시·도·특</u>	<u>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</u>
	<u>별자치도의 관할 구역</u>	<u>치단체와 수도사업 통</u>
	<u>에 걸쳐있는 경우에는</u>	<u>합이 필요하다고 판단</u>
	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	<u>하는 경우에는 대통령</u>
	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</u>	<u>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</u>
	<u>특별자치시장·도지사</u>	<u>라 통합계획을 수립할</u>
	<u>· 특별자치도지사가 통</u>	<u>수 있다. 이 경우 환경</u>
	<u>합계획을 수립한다.</u>	<u>부장관의 승인을 받아</u>
		<u>야 하며, 수립된 통합</u>
		<u>계획을 변경하는 경우</u>
		<u>에도 또한 같다.</u>

	③ <u>수도사업 통합계획</u> <u>에는 다음 각 호의 사</u> <u>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1. <u>지자체별 수도서비</u> <u>스 현황</u> 2. <u>지자체별 수도사업</u> <u>재정여건 및 경영현</u> <u>황</u> 3. <u>수도사업 통합 운영</u> <u>방식</u> 4. <u>재무개선 및 조직효</u> <u>율화 등 경영합리화</u> <u>방안 및 효과</u> 5. <u>수도서비스 개선방</u> <u>안 및 효과</u> 6. <u>그 밖에 지속가능한</u> <u>수도경영 기반구축</u> <u>을 위하여 대통령령</u> <u>으로 정하는 사항</u>	③ <u>통합계획</u>----- ----- ----- (각 호 개정안과 같음)
--	--	--

3. 수도시설 운영·관리 업무의 위탁 관련(안 제23조제1항)

안 제2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시설 운영·관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수도시설 운영·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

그런데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에서는 상수도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 뿐만 아니라 상수도조합이 일반수도사업자인 경우에도 수도시설 운영·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– 9 –

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 무를 위탁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있으며, <u>수도사업 통합을 추진</u> <u>하는 경우에도 또한</u> <u>같다.</u>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
---	--	---

4.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(부칙 안 제2조)

안 제24조제4항제1호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있고 부칙 안 제2조제1항은 해당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·2급 자격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
에게 부여하고,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3) 상수도조합을 일반수도사업자 범위에 포함하여야 수도시설 운영·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같은 조 제2
항 이하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

제23조(수도시설 운영·관리 업무의 위탁)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
야 하고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
다.

1.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

2.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

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·제28조의2·제29조·제32조·제33조제1항
·제36조·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. <개정 2011. 11. 14.>

④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·감독하여야
한다.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
할 수 있다.

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
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 5. 25.>

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
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,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
로 구성한다. <신설 2010. 5. 25.>

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⁴⁾ 해당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양성과정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개정안	수정의견
부칙	부칙
제2조(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① 제2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<u>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부터</u> 적용한다.	제2조(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① ----- ----- -----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양성과정부터 적용한다.

5. 그 밖의 사항

그 밖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약칭 규정 정리(안 제30조) 등의 간단한 자구 수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이 화 실)

4) 제24조(정수시설운영관리사)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·2급 및 3급으로 한다.

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·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,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칙 <제19662호, 2023.8.16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7조제3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)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은 공포 후 3년간 실시한다.